

## 수사절차에서 외국인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절차적 개선방안\*

### Procedural Improvement to Ensure the Defense Rights of Foreign Suspects in Investigative Procedures

권 지 혜\*\*

Kweon, Jihye

#### 목 차

- |                                |                     |
|--------------------------------|---------------------|
| I. 들어가며                        | III.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 II. 형사절차 및 권리와 영사관 통고에 관한 고지의무 | IV. 통역을 받을 권리       |
|                                | V. 마치며              |

국내 체류 외국인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며 2022년 기준 220만 명이 체류 중이며, 이는 우리 사회에서 약 25명당 1명에 해당한다. 오늘날 국내 체류 외국인은 우리 사회의 공동체 일원으로 함께 살아가는 구성원으로 자리 잡았으며, 이에 필연적으로 외국인범죄도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외국인은 우리 헌법의 해석과 UN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의거 방어권을 보장받을 주체로 인정되는 바와 달리 언어의 장벽과 법체계 및 문화의 차이로 수사절차에서 사실상 취약한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내국인과 달리 수사절차에서 차별적 처우를 받지 않도록 외국인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절차적으로 보호하는 정책적 배려가 요청되는 바이다.

본 문헌에서는 형사절차 및 권리에 관한 고지의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통역을 받

<https://doi.org/10.35148/ilsilr.2023..55.3>

투고일: 2023. 7. 31. / 심사완료일: 2023. 8. 21. / 게재확정일: 2023. 8. 23.

\* 이 연구는 2022학년도 수원대학교 학술진흥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본 문헌은 필자가 수행한 연구보고서 “김대근/이덕인/권지혜, ‘형사절차에서 외국인 보호제도 연구’, 대검찰청, 2022”의 일부를 수정·확장하여 발전시킨 것입니다.

\*\* 수원대학교 법행정학부 조교수

Assistant Professor, The University of Suwon

을 권리를 중심으로 수사절차에서 외국인 피의자의 방어권과 관련된 법령을 검토하고, 이를 행사함에 있어 발생하는 실무상 문제를 파악하여 절차적 보완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우선 형사절차 및 권리의 고지시 통역인이 대동하지 못할 경우에 대한 절차적 보완으로 번역문의 관리와 통역 어플리케이션 활용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특히 AI 기술 발달에 따라 일선에서 통역 어플리케이션의 사용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그 사용과 관련한 기준 및 절차의 마련이 필요하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관련하여서는 외국인 피의자가 겪는 선입상의 어려움을 공공변호인제도를 적용하여 보완하는 방안과 접견교통권의 강화를 위하여 민간 통역인 명부를 제공하고 스마트접견의 완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통역을 받을 권리에 관하여는 통역제공의 대상 및 판단이 수사기관의 임의적 판단이 아닌 객관적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져야한다는 점과 통역인이 부족한 현실에서 통역 기회 확대 방안, 그리고 통역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주제어]** 외국인, 수사절차, 방어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통역을 받을 권리

## I. 들어가며

1990년대 이후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30년 전 17만 명에 불과하였던 외국인의 수가 2019년 250만 명을 넘어섰다. 증가추세는 코로나-19 이후 다소간 감소하였으나 다시 회복 추세를 보이며 2022년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220만 명을 돌파하였다.<sup>1)</sup> 이러한 현상 속에서 오늘날 국내 체류 외국인은 우리 사회의 공동체 일원

1)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2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연보”, <[### <연도별 체류외국인 현황>](https://www.immigration.go.kr/immigration/1570/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aW1taWdyYXRpb24IMkYyMjglMkY1NzI1MDclMkZhcncRjbFZpZXcuZG8IM0ZwYXNzd29yZCUzRCUyNnJnc0JnbmRlU3RyJTNEJTl2YmJzQ2xTZXEIM0QIMjZyZ3NFbmkRkZVN0ciUzRCUyNmJzVmlld01pbmUlM0RmYWxzZSUyNnBhZ2UlM0QxJTl2YmJzT3BlbldyZFNlcSUzRCUyNnNiyY2hDb2x1bW4IM0QIMjZzcmNoV3JkJTNEJTl2>”, 검색일: 2023. 7. 30.</p>
</div>
<div data-bbox=)

(단위: 명)

| 연도   | 인원      | 연도   | 인원        | 연도   | 인원        |
|------|---------|------|-----------|------|-----------|
| 1993 | 169,749 | 2003 | 678,687   | 2013 | 1,576,034 |
| 1994 | 204,181 | 2004 | 750,873   | 2014 | 1,797,618 |
| 1995 | 269,641 | 2005 | 747,467   | 2015 | 1,899,519 |
| 1996 | 351,084 | 2006 | 910,149   | 2016 | 2,049,441 |
| 1997 | 386,972 | 2007 | 1,066,273 | 2017 | 2,180,498 |
| 1998 | 308,339 | 2008 | 1,158,866 | 2018 | 2,367,607 |
| 1999 | 380,101 | 2009 | 1,168,477 | 2019 | 2,524,656 |
| 2000 | 461,611 | 2010 | 1,261,415 | 2020 | 2,036,075 |
| 2001 | 566,835 | 2011 | 1,395,077 | 2021 | 1,956,781 |
| 2002 | 629,006 | 2012 | 1,445,103 | 2022 | 2,245,912 |

으로 함께 살아가는 구성원으로 자리 잡았으며, 이에 필연적으로 외국인 범죄 역시 증가하고 있다. 30년 전 1,000~2,000건 대 수준에 불과하던 연간 외국인범죄 발생 건수는 오늘날 30,000~40,000건 수준에 이르렀다. 범죄군별로는 폭력범죄가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며, 뒤를 이어 지능범죄, 절도범죄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응하여 외국인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형사절차상의 정비도 요청되는 바이다.

〈표 1-1〉 연도별 외국인범죄 현황<sup>2)</sup>

(단위: 명)

| 연도   | 인원    | 연도   | 인원     | 연도   | 인원     |
|------|-------|------|--------|------|--------|
| 1994 | 2,126 | 2003 | 4,023  | 2012 | 22,914 |
| 1995 | 1,676 | 2004 | 5,891  | 2013 | 24,984 |
| 1996 | 1,631 | 2005 | 6,521  | 2014 | 28,456 |
| 1997 | 1,750 | 2006 | 9,951  | 2015 | 35,443 |
| 1998 | 1,776 | 2007 | 10,073 | 2016 | 41,044 |
| 1999 | 2,306 | 2008 | 15,122 | 2017 | 33,905 |
| 2000 | 2,447 | 2009 | 15,268 | 2018 | 32,313 |
| 2001 | 2,911 | 2010 | 14,621 | 2019 | 36,400 |
| 2002 | 3,467 | 2011 | 27,436 | 2020 | 35,390 |

우리 헌법은 기본권 향유 주체를 “모든 국민”이라 하여 국민에 한정하는 듯이 보이지만, 해석상으로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이 널리 인정된다. 특히 자유권과 평등권은 존엄한 인간이 누리는 당연한 인권에 속하며, 이러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주장하고 보호를 구하는 청구권적 기본권도 당연히 인정된다. 또한 헌법 제6조 제2항에 의거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를 보장받는다. 따라서 외국인도 형사절차에서 적법절차원칙이라는 이념하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의 방어권이 보장되어야 한다.<sup>3)</sup>

그러나 외국인 피의자는 방어권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절차적 권리와 인권이 강조되는 형사절차에서 매우 취약한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다. 언어와 법지식 및 문화적 차이는 외국인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 큰 장벽이 된다. 우리의 형사절차에 관해 충분히 안내를 받지 못하거나 잘못 이해한 외국인 피의자는 자신의 방어권을 적절히 행사하지 못한

2) 국가통계포털, “경찰청범죄통계”, <[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parentId=C.1&vwcd=MT\\_ZTITLE&menuId=M\\_01\\_01](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parentId=C.1&vwcd=MT_ZTITLE&menuId=M_01_01)>, 검색일: 2023. 7. 30.

3) 한수웅, 헌법학입문 제5판, 법문사, 2021, 429쪽.

채로 형사절차가 진행되어 불이익을 받곤 한다. 이러한 측면은 절차적 인권보호가 특히나 요청되는 수사단계에서 더욱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렇기때문에 외국인 피의자가 방어권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문헌은 수사단계에서 외국인 피의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쟁점으로서 고지의무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통역을 받을 권리를 중심으로 관련 법령 및 실무상 어려움을 검토하고, 이를 보완·개선할 절차적 방안들을 모색하고자 한다.

## II. 형사절차 및 권리와 영사관 통고에 관한 고지의무

### 1. 형사절차 및 권리의 고지

고지의무는 피의자에게 형사절차 및 권리에 관하여 충분히 안내함으로써 피의자가 이를 이해하고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돕는 필수요건이다. 헌법 제12조는 체포·구속을 할 때에는 적법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을 권리를 인정한다. 형사소송법은 이를 구체화하여 피의자 체포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제200조의5), 긴급체포시에는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지만 사유를 고지하여야 한다(제200조의3). 구속시에도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의 기회를 줄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제201조의2 제10항, 제200조의5), 구속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공소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지하고 집행하여야 한다(제201조의2 제10항, 제85조 제3항). 피의자 신문시에도 피의자가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점,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점,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여야 한다(제244조의3 제1항).

외국인 피의자는 문화, 제도, 법교육 등의 차이로 인하여 내국인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형사절차 및 권리에 관한 이해가 낮다. 또한 타국에서 수사를 비롯한 형사절차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두려움 또는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크게 발생한다. 이로 인해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범행을 부인하면 석방된다는 그릇된 인식 등으로 인해 무작정 범행을 부인하는 행동으로 오히려 불이익을 받곤 한다. 따라서 외국인 피의자에게 고지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형사절차 및 권리를 충분히 안내하고 이해토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2. 영사관 통고 고지

헌법 제12조 제5항 후단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가족 등에 대한 통지의무를 명시한다. 나아가 외국인 피의자는 가족뿐만 아니라 나아가 자국 영사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리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UN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Vienna Convention on Consular Relations)’은 체포, 구금, 유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구속된 외국인이 본국의 영사기관에 통보할 것을 요청하면 이를 지체없이 영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때 영사기관에 보내는 어떠한 통신도 지체없이 전달되어야 하며, 이와 같은 권리는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6조).

법무부 예규 제1100호 ‘외국인범죄수사처리지침’에 따르면 체포 또는 구속된 외국인에게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본국의 영사관원 또는 명예 영사관원과 자유롭게 접견, 통신할 권리가 있으며, 본인의 요청이 있으면 체포 또는 구속된 사실을 지체없이 영사기관 또는 명예영사기관에 통고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이를 조서에 명기하여야 한다.<sup>4)</sup> 다만

4) 경찰조사와 관련하여서는 행정안전부령 제305호 ‘경찰수사규칙’과 경찰청훈령 제1057호 ‘범죄수사규칙’에서 통보절차를 구체화한다.

**경찰수사규칙 제91조(외국인에 대한 조사)** ② 사법경찰관리는 외국인을 체포·구속하는 경우 국내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영사관원과 자유롭게 접견·교통할 수 있고, 체포·구속된 사실을 영사기관에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리는 체포·구속된 외국인이 제2항에 따른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3호서식의 영사기관 체포·구속 통보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해당 영사기관에 체포·구속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범죄수사규칙 제215조(외국인에 대한 조사)** ① 경찰관은 외국인의 조사와 체포·구속에 있어서는 언어, 풍속과 습관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경찰수사규칙」 제91조 제2항에 따라 고지한 경우 피의자로부터 별지 제118호서식의 영사기관통보요청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경찰관은 「경찰수사규칙」 제91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별도 외국과의 조약에 따라 피의자 의사와 관계없이 해당 영사기관에 통보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법원은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경찰수사규칙 등에 의거하여 영사관 통고와 관련한 권리와 절차를 인정하되, 수사기관이 외국인을 체포하거나 구속하면서 영사통보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체포나 구속절차 모두를 위법하다고 판단하지는 아니하며, 수사기관의 증거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인지 여부를 판단한다.<sup>5)</sup>

### 3. 통역인 대동의 한계

문제는 수사당국에서 외국인 피의자에게 고지의무를 성실히 이행코자 하여도 언어의 장벽으로 외국인 피의자와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점이다. 피의자가 국어에 능통하지 않을 경우 수사당국은 통역인을 대동하여 해당 외국어로 고지의무를 이행하여 피의자가 내용을 이해하고 방어의 기회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2항에 따르면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할 수 있으며, 동법 제244조의5는 피의자를 신문할 때 피의자의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직권 또는 피의자·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현장에서 급박하게 이루어지는 체포·구속시에는 그 이유와 형사절차상 권리를 외국어로 고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에 외국인 피의자의 경우 고지 절차를 통한 방어권의 보장이 본래적 기능을 다하기가 어렵다. 수사당국에서 통역인단을 활용하여 체포·구속영장 집행시 통역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였지만, 미리 일정을 확정하고 이루어지는 피의자 신문시와 변호인 접견시에도 통역인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에서 급박히 이루어지는 체포·구속시에 항상 통역인을 대동하여 외국어로 고지의무를 다할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나아가 체포·구속영장 청구시에 피의자가 외국인이라도 국어에 능통한지 여부를 모른다면 사전에 통역인 대동여부를 결정하기가 어렵다. 또한 국적을 참고하더라도 실제로 사용하는 언어가 무엇인지 불분명한 경우도 존재한다. 이 경우 영장 집행시 통역인을 대동하더라도 현장에서 해당 언어 구사자가 부재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5)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도17103 판결.

#### 4. 번역문 관리와 통역 어플리케이션의 활용

실무상 통역인을 대동하여 피의자가 이해가능한 언어로 고지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한 번역문을 첨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된다.<sup>6)</sup> 사전에 다양한 외국어로 주요 죄명, 법조문, 변호인 선임권 등이 번역된 안내문을 마련한 뒤 이를 지참하여 제공하는 방안으로 검찰의 경우 2019년 15개 외국어로 체포·구속영장의 양식과 주요 죄명을 번역하여 사용 중이다.<sup>7)</sup> 그러나 이러한 번역문 제작은 일회성 정책으로 이루어진 후 이를 장기간 사용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하여 제작시 발생한 오역이 그대로 적용된 채 사용이 되기도 하고,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언어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기도 한다.<sup>8)</sup> 또한 계속해서 증가하는 국내 체류 외국인의 국적 수에 비하여 번역된 언어의 수가 미흡한 측면도 있다. 따라서 번역문 제작 및 관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피의자 체포·구속시 한정된 번역 내용으로 구체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일선에서는 통역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수사기관의 장비에 통역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파파고 등 민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 활용된다. 하급 심법원에서도 긴급체포시 절차를 준수하였다면 통역인을 대동하지 못하였더라도 통역 어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하여 나눈 의사소통에 위법이 없다 판단하기도 한다.<sup>9)</sup>

통역 어플리케이션의 활용은 외국인 피의자에게 고지의무를 다하기 위한 정책적 선의 의도에서 시작되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수사기관의 편의주의적 사고에 입각하여 통역 어플리케이션이 사용될 위험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용 상황에 대한 기준과 녹음·녹화 등의 절차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외국인 피의자의 인권보장이라는 명목하에 타국에서 언어가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스마트폰 화면을 통해 불명확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등 어플리케이션을 무비판적으로 활용한다면 오히려 통역인을 통하여 정확하고 충실한 통역을 받을 기회를 보장하지 못하

6) 김운곤, “외국인 범죄에 대한 형사사법적 대응”, 법학논집 제6호,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소, 2000, 295쪽.

7) 수원고등법원 2020. 11. 5. 선고 2020노336 판결; 중앙일보, “230만 국내 체류 외국인, 검찰 체포 때 통역인 조력 받는다”, 2019. 8. 7,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546274#home>>, 검색일: 2023. 7. 30.

8) 외교부의 안내 자료에서 오역·오타가 수백건이 발견되었다. 번역문의 정확성 제고가 요청된다. 한겨레, “외교부 영어 ‘성폭력 예방교육 자료’ 오역·오타 315곳”, 2022. 10. 19,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063400.html>>, 검색일: 2023. 7. 30.

9) 뉴시스, “파악 투약 외국인 ‘통역인 없어 위법 증거’...법원 ‘통역기 활용, 적법’”, 2022. 10. 7,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21007\\_0002041136#\\_eniple](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21007_0002041136#_eniple)>, 검색일: 2023. 7. 30.

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미국 연방지방법원에서는 “문장은 성립되지만 뜻은 통하지 않는(literal but nonsensical)” 번역 내용의 정확성과 해당 내용에 대한 이해가 실제 의사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만한 증거가 부존재하다는 점에서 통역어플리케이션을 사용했던 수색의 적법성을 부인하기도 하였다.<sup>10)</sup> 따라서 부득이 통역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무엇이며, 통역 품질이 담보되는 어플리케이션의 인증, 어플리케이션 활용시 피의자의 동의 확보 방안 등 사전에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어플리케이션의 활용으로 침해될 수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절차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 III.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대한 개인의 방어, 즉 피의자의 국가권력에 대한 무기대응의 실현에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이다. 헌법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일환으로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제12조 제4항)고 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인정한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2조 제4항에서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명시한 것은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 대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하기 위한 것이며, 불구속 피의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명시적으로 규율하고 있지 않더라도 우리 헌법에 나타난 법치국가원리,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인정되는 당연한 내용임을 밝혔다.<sup>11)</sup>

#### 1. 변호인 선임권

##### 1.1 의의

변호인 선임권은 헌법이 기본권으로 인정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전제로, 형사절차 및 권리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부족하고 수사의 대상이 되어 심리적

10) *United States v. Cruz-Zamora*, IN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KANSAS, Case No. 17-40100-CM 판례에 관하여는 김한균, “형사절차상 인공지능기반 통·번역 어플리케이션 활용과 적법절차”,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제13권 제3호, 한국형사소송법학회, 2021, 151-157쪽 참조.

11) 헌법재판소 2004. 9. 23. 선고 2000헌마128 결정.

으로 불안한 피의자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방어권을 실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제30조 제1항)고 하여 변호인 선임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 선임권을 반드시 고지할 것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제87조 제1항, 제88조, 제209조). 그러나 우리의 경우 재판단계에서 변호인 선임 비율이 약 54%인 반면 경찰의 피의자신문 등의 변호인 참여 비율은 약 1% 정도에 불과하여 수사단계에서 변호인 조력이 미흡한 상태이다.<sup>12)</sup>

## 1.2 외국인 피의자의 변호인 선임상의 문제

체포·구속으로 인하여 자유가 제약된 상황의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의거하여 변호인 접견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우선적으로 일선 수사기관에 배치된 당직 변호인과 접견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수사 초기 단계에서 변호인의 선임 등에 관하여 조력을 받고 변호인 선임 등의 대응에 나선다.<sup>13)</sup> 그런데 당직 변호인마다 외국어 능력 정도가 다르고, 무엇보다 모든 외국어를 변호인이 구사할 수 없으므로 외국인 피의자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인 선임을 비롯한 조력을 받는 데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하여 법률적 소양의 부족이나 당혹감·추방의 두려움과 같은 감정적 부담감으로 초기 수사단계에서 변호인 선임을 포기한 채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혐의를 인정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변호인의 선임을 조력할 외부 가족이 부재하는 문제도 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 당사자뿐만 아니라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도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

12) <2015~2019년 연도별 경찰 수사단계에서의 변호인 참여 현황>

(단위: 명)

| 연도 \ 구분 | 전체 검거 인원  | 피의자 신문과정 등 변호인 참여 수 | 비율(%) |
|---------|-----------|---------------------|-------|
| 2015    | 1,500,234 | 5,092               | 0.3   |
| 2016    | 1,552,455 | 5,941               | 0.4   |
| 2017    | 1,413,717 | 9,781               | 0.6   |
| 2018    | 1,328,609 | 13,529              | 1.0   |
| 2019    | 1,342,854 | 18,802              | 1.4   |
| 합계      | 7,137,869 | 53,145              | 0.7   |

13) 실제로 일반적으로 체포 후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변호인의 선임이 이루어진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 다. 신의기/강은영, 범죄수사절차상 피의자의 인권침해 현황 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03, 118쪽.

임할 수 있음을 규정한다(제30조 제2항). 신체의 자유가 제약되고 있는 체포·구속된 피의자는 외부의 조력을 통하여 적절한 변호인을 선임하고 조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타국에 홀로 나와 있는 외국인 피의자의 경우 가족의 부재로 외부로부터 조력을 받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현실적으로 직장 또는 학교 동료들을 통해 이주단체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일한 방법에 가깝지만 주변인의 바쁨, 비용지불 등의 어려움이 여전하다. 따라서 외국인 피의자가 초기부터 실질적으로 변호인의 선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절차적 보호가 필요하다.

### 1.3 형사공공변호인제도의 활용

#### 1.3.1 국선변호인 미적용

현행 헌법상 보장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피고인에게만 한정하여 인정된다.<sup>14)</sup> 피의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절차와 체포구속적부심을 청구한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8항, 제214조의2 제10항). 이와 달리 유럽인권협약(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ECHR)을 살펴보면 형사상 혐의를 받는 모든 사람은 본인이 직접 방어하거나 또는 본인이 직접 선정한 변호인을 통하여 방어할 권리가 인정되며, 변호인에 대하여 충분한 비용을 지불할 수 없다면 사법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무료로 변호인의 지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된다(제6조 3. (c)). 재판절차뿐만 아니라 수사절차에서도 방어권을 보장받기 위한 핵심적 내용으로 국선변호인과 같은 무료로 조력을 받을 필요성과 직권에 의한 선정을 인정하는 것이다.<sup>15)</sup>

#### 1.3.2 형사공공변호인제도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는 2017년부터 헌법 제12조 제4항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최대한 보장코자 초동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형사공공변호인제도를 추진 중이다.<sup>16)</sup>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란 수사단계의 피의자에게 국가가 국선변

14) 이에 대한 비판으로 이재상/박미숙, 수사절차상 피의자의 변호권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124쪽.

15) 유럽인권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이형석, “유럽인권협약상 권리보장을 위한 체약국의 의무 -유럽인권재판소 결정례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47집,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참조.

16) 형사공공변호제도의 쟁점 및 유형 등에 관하여는 김대근, “형사공공변호인제도의 쟁점과 전망”, 치안정책리

호인을 선정해주어 수사 초기부터 종결시까지 변호인의 조력을 제공하는 제도로, 미성년자·70세 이상인 자·농아자·심신장애자 등 사회적 약자와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약자가 단기 3년 이상 법정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혐의로 출석요구받은 경우 필요적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자 한다. 필요적 국선에 해당할 경우 수사기관이 대상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할 때 형사공공변호공단에 이를 통지한다. 또한 이에 해당하지 않는 피의자도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경제적 자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피의자의 신청과 심사를 거쳐 국선변호인을 선정한다. 즉 필요적 국선과 신청에 의한 국선 두 유형으로 운영하고자 한다.

### 1.3.3 외국인 피의자에 대한 적용검토

현행 형사공공변호인 도입안에 따르면 필요적 국선변호인 제공의 대상은 사회적·경제적 약자이다. 구체적으로는 미성년자, 70세 이상인 자, 농아자, 심신장애자를 사회적 약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외국인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 언어, 문화 등의 차이로 형사절차에서 내국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변호인 선임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외국인 피의자에게 국선변호인을 제공하는 절차적 보호방안이다. 또한 외국인 피의자에게 형사공공변호인제도에 관한 번역 안내문을 준비하여 단기 3년 미만의 경우에도 신청국선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고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형사공공변호인제도를 무한히 확대 적용할 수 없으므로 제공 대상의 범위와 순서를 적정히 규율하여 공적 변호의 양과 질을 담보하는 것이 중요하다.<sup>17)</sup> 형사재판에서 무죄율이 1~2%에 불과한 현실에서 연간 4,500억의 예산이 소요되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무한히 확대 적용할 수는 없다.<sup>18)</sup> 또한 외국인 피의자는 국선변호인을 제공하더라도 통역인, 번역문 또는 통역 어플리케이션과 같은 보조 통역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조력의 효과가 상당히 저하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외국인 피의자에게 공공변호인제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공공변호인이 조력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유럽 인권협약과 같이 무료 조력 후 비용을 청구하는 등의 보완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sup>19)</sup>

뷰 제72호, 치안정책연구소, 2021 참조.

17) 이우영, “피의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헌법적보장 관점에서의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도입입법안 분석 및 개선방안”, 입법학연구 제19집 제1호, 한국입법학회, 2022, 21쪽.

18) 법률방송, “‘피의자 인권보호’ vs ‘세금으로 형악법 보호 안 돼’...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공청회”, 2019. 5. 21, <<http://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23159>>, 검색일: 2023. 7. 30.

19) 유럽인권협약의 내용에 관하여는 주호노, “변호인선임권과 접견교통권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국제인권법의

## 2. 접견교통권

### 2.1 의의

접견교통권은 국가기관의 부당한 방해나 간섭없이 변호인 등과 자유롭게 접촉하고, 조언 및 상담을 받으며, 대화 내용 등 교통 내용의 비밀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피의자는 변호인과 접견교통을 통해 조언을 얻고 대응책을 논의하며 법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회복하여 방어권의 행사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형사소송법은 구속된 피의자는 타인과 접견하고 서류나 물건을 수수하며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제209조, 제89조). 변호인과 접견교통권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접견교통을 제한할 수 없으며, 교도관 또는 경찰관 등이 입회하거나 내용을 청취, 녹취하거나 접견 장면을 촬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sup>20)</sup> 다만 수용시설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가시거리에서 미결수용자를 관찰할 수는 있으며(형집행법 제84조 제1항 단서) 수용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접견이 허용되는 빈도나 시간을 제한받을 수 있다.<sup>21)</sup>

### 2.2 변호인의 통역인 섭외

국어에 능통하지 않은 외국인 피의자가 변호인과 자유롭게 접견하고 대화하기 위해서는 통역인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통역인 수의 부족으로 피의자와 변호인이 희망하는 시간에 통역인을 대동하여 접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우며, 이로 인하여 충분한 접견 횟수도 확보하지 못한다. 통역인 또한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지 못해 사건 이해도가 낮은 상태에서 접견에 참여하여야 하므로 통역의 질이 저하된다. 이러한 문제로 변호인은 부득이하게 접견교통시 사적으로 통역인을 섭외하는 일이 잦다. 그런데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해당 언어의 통역인을 알고 있는 경우는 드물며, 수소문을 통하여 섭외를 하더라도 사법 통역의 질에 상응하는 통역을 담보하기 어렵고, 전문통역인의

관점에서.”, 경희법학 제49권 제4호,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271쪽.

20)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송승현, “변호인 접견교통권과 인권 보장 간의 괴리”, 법학논문집 제43집 제3호,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19, 120쪽.

21) 이에 관하여 재판의 공정성이 침해되었는지를 결과론적 측면에서 판단한다는 비판으로 박해림,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의 보장과 그 한계에 대한 고찰”, 중앙법학 제21집 제2호, 중앙법학회, 2019, 246쪽.

고비용이 부담된다.

근본적으로 통역인단의 규모 확대가 요청되나 이외에도 우선적으로 자체 통역인 섭외의 어려움을 해결할 절차적 보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일선 수사기관에서 운영 중인 지역 이주노동자인권단체나 이주여성인권단체 등과 연계한 민간통역인 봉사단의 명부를 선임된 변호인에게도 필요적으로 제공케 함으로써 섭외단계의 어려움을 일부 해소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만하다. 피의자의 통역을 받을 권리를 고려하여 사적으로 지불한 통역비의 일부는 현행 통역비를 기준으로 후불 지급할 수 있다. 민간 통역인 명부제도를 운영할 경우 통역의 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윤리의무교육과 법교육이 필수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 2.3 비변호인의 접견교통 강화

접견교통권에는 비변호인과의 접견도 포함된다. 가족 등 주변인과의 접견은 형사절차에 있어 필요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변호인을 선임하는 등 방어권 행사에 기여하며, 특히 심리적 안정을 되찾게 해준다. 외국인 피의자는 내국인보다 심리적 불안상태가 높으므로 가족을 포함한 주변인들과의 접견교통이 상당히 중요하다. 외국인 피의자의 비변호인 접견교통은 문화적·종교적 배려가 요청되는 바이며, 특히 가족이 우리나라에 없는 경우에 대응하여 면회뿐만 아니라 통화, 서신 교환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외국인 피의자는 변호인 탐색 및 비용 마련 등 본국으로부터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가족과 안부를 직접 주고 받으며 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는 교류의 상당 부분이 변호인을 통하여 가족에게 전달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스마트접견을 외국인 피의자에게는 완화적으로 접근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스마트접견은 기존 화상접견과 달리 교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본인의 휴대전화를 통하여 접견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2022년부터 미결수용자에게도 적용되고 있다.<sup>22)</sup> 그런데 스마트접견을 위해서는 최초 1회 교정시설을 방문하여 신분을 사전에 등록하여야 하는데, 시설방문이 어려운 타국 주재 외국인 피의자 가족의 경우 관련 서류의 제출 시 변호인의 대리등록을 허용케 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

22) 스마트접견에 관하여는 법무부 참조.

법무부 교정본부, “스마트접견예약”, <<https://www.corrections.go.kr/corrections/1110/subview.do>>, 검색일: 2023. 7. 30.

## IV. 통역을 받을 권리

### 1. 의의

형사절차에서 국어에 능통하지 않은 외국인에게 충분하고 정확한 통역이 제공되고, 통역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확보될 때 적법절차 원칙이 구현되고 방어권이 보장될 수 있다. 따라서 수사 및 공소제기의 과정에서부터 재판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사법 통역(Judiciary Interpretation)이 제공되어야 한다.<sup>23)</sup> 수사절차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은 통역의 위촉과 신뢰관계자의 동석을 규정한다.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2항에 따르면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할 수 있으며, 동법 제244조의5는 피의자를 신문할 때 피의자의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직권 또는 피의자·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법무부령 제1010호 인권보호수사규칙에서는 외국인을 조사하는 경우 당사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통역할 것을 명시하고(제61조), 2022년 대검찰청은 통역인 운영에 관한 일반 규정을 마련하였다.<sup>24)</sup>

### 2. 통역제공의 대상 및 판단

형사소송법 제180조는 통역제공의 대상으로 ‘국어에 통하지 아니하는 자’를 명시하고 있으나, 국어에 능통하지 않은 사람의 의미는 명확하지 못하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국어에 통하지 아니하는 자’라 함은 국어에 의한 일상적 회화에 상당히 지장이 있는 자를 말하고, 외국인이라도 국어에 통하는 자인 경우에는 통역하게 할 필요가 없으나 대한민국 국민이라도 국어에 통하지 아니하면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며, 피고인 등이 국어에 통하지 아니하는 자인지의 여부는 법원이 피고인 등의 학력, 경력, 직업, 공판기일에서 진술내용 및 태도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sup>25)</sup>

23) 법정통역(Court Interpretation)이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개념용어나, 재판단계에서의 통역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수사단계에서 외국인 피의자의 경우 사법통역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한 논의로는 송시섭, “사법통역인 법조윤리의 법제화 -통역의 ‘정확성’이 형사재판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홍익법학 제23권 제1호,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35쪽.

24) 대검찰청 예규 제1281호 통역인 운영규정.

25)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9327 판결.

반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외국인이 일상적인 한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절차에서의 진술은 다른 문제이므로 의사소통의 왜곡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특히 외국인의 경우 우리나라 형사절차에 대해서 생소하거나 이해가 부족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한글을 읽고 쓸 수 있다’는 진술만으로는 통역없이 조사받는 것에 대한 명시적 동의로 볼 수 없으며, 통역의 제공 여부를 확인하는 의사에 대하여 보다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였다.<sup>26)</sup>

생각건대, 외국인 피의자에게 있어 통역의 제공은 형사사건을 진행함에 가장 기초적이자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단순히 일상생활에서 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형사절차에 관련한 질문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인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재와 같이 통역 필요의 여부를 수사기관의 임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판단 기준을 마련하여 통역제공 기회에 대한 절차적 보호가 마련되어야 한다.<sup>27)</sup>

### 3. 통역인 규모

#### 3.1 현황

2022년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각급 검찰청에서 운영하는 통역인은 총 592명이다.<sup>28)</sup> 중국인 통역인이 197명으로 가장 많으며, 영어 133명, 일어 및 베트남어 64명, 러시아어 56명, 몽골어 41명, 불어 26명, 스페인어 11명 순이며, 통상적으로 20개 내외의 외국어 통역이 제공되고 있다. 국어에 능통하지 않은 외국인 피의자에게 통역의 제공은 형사절차를 진행하는 데에 가장 필수적인 수단이나 수사 실무에서 통역인의 수가 언제나 부족한 문제가 상존한다. 특히 검찰은 법원이나 경찰에서 운영하는 규모보다 상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난다.<sup>29)</sup> 경찰의 경우 2022년 12월 기준 총 4,347명의 통역인력(민간통역 3,387명, 내부 통역인력 960명)을 활용하고 있다.<sup>30)</sup>

26) 국가인권위원회 20진정0256500.

27) 실질적인 통역 제공 방식에 관한 규정이 부재하다는 비판하며 미국의 언어 실력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을 제시한 이지은/장원경, “사법통역제도 개선에 관한 소고”, 법학논집 제20권 제3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262쪽.

28) 법무부 제출 권인숙 의원실 자료.

29) 2016년 법원 1,762명 경찰 2,441명의 통역인을 선발한 반면 검찰은 2015년 140명의 통역인만을 선발하였다. 법원, 검찰, 경찰청의 2012~2016년 통역인 현황에 관하여는 홍서연, “국내 사법통역 교육의 현황 및 제언”, 통번역학연구 제22권 제2호,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연구소, 2018, 215-216쪽.

### 3.2 통역 기회의 확대

한편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가에 따라 통역인 확보가 필요한 언어를 파악하고 통역인단의 수를 조정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 범죄발생 대비 통역인의 수가 부족하여 신문과정, 나아가 재판과정에서도 제대로 된 통역을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현실을 안 피고인이 통역지원이 누락된 것을 알면서도 숨기고 있다가 형사절차의 마지막에서 부당함을 알리는 악용사건까지도 발생하였다.<sup>31)</sup> 통역인 수의 부족으로 수사 단계에서는 지역 이주노동자인권단체나 이주여성인권단체와 같은 시민사회의 도움을 통하여 제공하기도 한다. 예산 등 현실적인 제약으로 단기간 통역인단을 확대하기 어려운 점을 반영하여 연계기관을 통하여 보완하는 현재의 방식을 절차화할 필요가 있다. 일회성 민간통역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되 통역인의 의무·윤리 등을 담은 안내자료를 작성해두고, 자료의 제공 및 이해확인 등을 절차화 하여 마련하여 통역의 질을 보완하여야 한다.<sup>32)</sup>

극소수언어의 사용자나 공용어가 아닌 방언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민간의 도움이 더욱 요청되는 바이다. 2016년 한 검찰조사에서 가나 출신 피의자가 공용어인 영어가 아닌 방언을 사용하여 전문 통역인의 섭외에 실패했고 결국 함께 한국에 온 친구를 통하여 영어로 1차로 통역한 뒤 다시 통역인이 한국어로 바꿔 설명하는 이중통역이 이루어졌다.<sup>33)</sup> 이처럼 통역을 구하기 어려운 언어의 경우 사건마다 현재와 같이 일선 수사담당자의 기지로 해결할 수밖에 없도록 방임한다면 수사여건에 따라 통역을 제공받을 권리의 실현 여부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를 절차적으로 보호할 방안으로 법원과 같이 적합한 통역인 후보자가 없을 경우 그 사실을 법원행정처장에게 통보하고, 법원행정처장이 적합한 통역인을 찾아내어 법원에 통지하도록 하는 방안을 수사절차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sup>34)</sup>

30) 경찰도 10년 전 통역인력이 3,820명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 수의 증가추세에 비하여 증원이 더딘 편이다. 뉴시스, “경찰 ‘통역 서비스’ 제자리 걸음... 언어장벽에 범죄신고·수사 ‘막막’”, 2022. 12. 10,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21209\\_0002117312](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21209_0002117312)>, 검색일: 2023. 7. 30.

31) 서울경제, “통역 인력 없이 진행했다가 무효되는 외국인 재판”, 2019. 4. 12, <<https://www.sedaily.com/NewsView/1VHU60USXA>>, 검색일: 2023. 7. 30.

32) 더불어 민간 통역인의 안전보장, 인식 및 처우개선도 동반되어야 절차가 유지될 수 있다. 연합뉴스, “외국인 수사에 필수인 민간 통역인...푸대접에 이탈 현상”, 2022. 6. 20, <<https://www.yna.co.kr/view/AKR20220619034200004>>, 검색일: 2023. 7. 30.

33) 법률신문, “늘어가는 외국인범죄... 전문 통·번역인은 크게 부족”, 2016. 9. 19,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3090>>, 검색일: 2023. 7. 30.

34) 통역·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 제8조 (적합한 통역·번역인 후보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의 처리)

장기적으로는 통역인 인증제도를 통하여 각 형사기관에 나뉘어 분포되어 있는 통역인단의 통합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sup>35)</sup> 인증제도를 실시함으로써 통역인들에게 사법통역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특히 사법통역인이 부족한 소수언어에서 인재를 발굴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많은 수의 사법통역인들 또한 통역 인증제도 필요성을 긍정하는 편이다. 다만 자원의 중복투입을 방지하고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원, 검찰, 경찰 등 수사절차 관련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것보다는 국가차원의 인증제도 마련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sup>36)</sup>

## 4. 통역의 품질

### 4.1 정확하고 충실한 통역

피의자가 사용하는 언어의 통역을 제공하는 것이 통역을 받을 권리의 형식적 보장이 라면 정확하고 충실한 통역은 실질적 보장에 해당한다. 즉 실질적으로 방어의 기회를 행사할 정도로 내용과 의미를 정확하고 충실하게 전달할 수 있는 품질의 통역 제공이 필요하다.<sup>37)</sup> 질 높은 통역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수사과정에서 행해진 진술이나 대화가 정확하게 전달되어야 한다.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형사사건에서는 작은 어휘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법적 결과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해당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 일정 수준 이상의 구사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다.<sup>38)</sup>

① 각급법원은 재판사무시스템에 등재된 통역·번역인 후보자가 통역·번역할 수 없는 외국인 피고인 사건이 접수되거나 해당 외국인 피고인 사건에 적합한 통역·번역인 후보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실을 법원행정처장(참조 사법지원실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원행정처장(사법지원실장)은 제1항에 기재된 외국어를 사용하는 통역인이나 해당 외국인 피고인 사건에 적합한 통역·번역인을 찾아내어 제1항 기재 법원에 통지한다.

35) 인증제에서 나아가 등급제를 시행하고 통역업무 및 보수에 차등을 두는 경우도 존재한다. 미국의 예와 관련하여 이지은/장원경, 앞의 논문, 272쪽.

36)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도 외부 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통한 통·번역인 풀(pool)의 확대, 통합통역 네트워크의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점이 논의되고 있다. 이태일리, “법원행정처, ‘항소법원’ 설치 추진한다… 인적구성 등 검토”, 2022. 9. 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800726632458152>>, 검색일: 2023. 7. 30; 통역인들도 단일인증제도를 선호한다. 김한식/주진국/정정림, 외국인을 위한 수사·공판서류 번역 및 통역 실태 조사 연구, 대검찰청 공판송무과, 2008, 64쪽.

37)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나 신용성이 문제되지 않기 위해서도 엄격한 전문성을 요청하여야 한다. 임창호, “외국인 범죄수사의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17권 제4호, 한국공안행정학회, 2008, 324쪽.

38) 예컨대 과거 강간치상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경찰진술에서 상대방의 속옷이 ‘떨어졌다’고 진술하였으나

충실한 통역도 요청된다. 충실한 통역이란 질문자나 답변자의 뉘앙스를 전달하고 통역인의 판단에 따른 가감을 지양하며 만약 질문이나 답변이 이해되지 않는 경우 통역인이 판단하지 않고 이를 전달하는 등의 태도를 의미한다. 형사절차에서 통역인은 발화자가 아니라 이를 전달하는 자의 역할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발화자들의 말에 충실하여야 하며, 그러할 때에 양질의 통역이 제공된다 할 수 있다.<sup>39)</sup>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시간의 제약과 효율적인 절차 진행을 위하여 요약 통역이 요청되는 경우가 많고 순차 통역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도 다수이다. 이 경우 정보의 손실과 왜곡의 가능성이 있으며, 무엇보다 진술과 통역시간의 차이 등을 인지한 피의자가 통역인 및 그 내용 나아가 자신의 변호인을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sup>40)</sup> 따라서 정확성과 충실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절차적 보완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선 고려해 볼 만한 점은 통역인이 통역 내용을 다시 확인하며 검토하는 절차를 도입하는 것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의 진술 내용을 조서로 기재하고 피의자의 확인을 받고 서명 또는 날인케 하지만(제244조), 통역인의 서명 또는 날인에 관한 규정은 부존재한다. 서명 또는 날인의 과정은 진술 내용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검토하는 기회가 되므로 조서에 통역인의 서명 등을 받는 것을 요건으로 절차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sup>41)</sup>

또한 향후 통역의 정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녹음 또는 녹화하여 보관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수사단계에서는 2007년부터 영상녹화제도가 실시되고 있지만, 피의자신문 영상녹화는 2019년 기준 실시율이 12.2%에 불과하다.<sup>42)</sup> 경찰의 진술영상녹화 실시율도 6%에 그친다. 이에 2022년 3월, 대검찰청은 ‘영상녹화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하여 통역이 필요한 외국인을 조사하는 경우 영상녹화를 필요적으로 실시하여 영상녹화의 활용을

통역요원이 이를 같은 발음의 ‘잡아 뜯었다’고 오역하여 자칫 유죄판결을 받을 위험에 놓인 사례가 있다. 서울신문, “무고한 외국인 성폭행범 만들 뻔한 ‘경찰 통역’”, 2015. 2. 17,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0217010010>>, 검색일: 2023. 7. 30.

39) 미국사법통·역인협회(NAJIT; National Association of Judiciary Interpreters&Translators)에서는 원어의 통사적·의미적 패턴을 고려할 것, 원어의 언어사용역·스타일·톤을 보존하면서 메시지를 충실히 전달할 것, 통역어의 표현은 자연스러울 것, 의미왜곡이나 설명의 가감 부연 없이 정확하게 통역할 것, 추측을 피할 것, 오류발생 즉시 기록을 위해 정정할 것 등을 직업상의 윤리이자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송시섭, 앞의 논문, 40쪽.

40) 이지은/장원경, 앞의 논문, 264쪽.

41) 안성훈/이지은, 형사사법절차상 사법통역의 개선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 128쪽.

42) 연합뉴스, “검찰, 피의자 영상녹화제도 유명무실…올해 실시율 12.2%”, 2019. 10. 1, <<https://www.yna.co.kr/view/AKR20191001044400004>>, 검색일: 2023. 7. 30.

확대하기로 하였다.<sup>43)</sup> 이러한 변화는 외국인 피의자의 인권 보장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개정 지침에는 이의제기 시에 대한 대응 및 재통역 진행에 관한 부분이 부재하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sup>44)</sup> ‘통역·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예규’를 참고하면, 피고인이 통역의 정확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 피신문자가 법정에 있는 때에는 동일한 내용의 신문과 통역을 다시 시행하게 하고, 재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통역인에게 녹음물을 보내 해당 부분을 다시 통역하게 하여 공판조서의 기재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더라도 통역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면 별도의 통역인을 지정하여 감정을 의뢰(제14조)하여 통역내용의 정확성과 충실성을 면밀히 검토한다.<sup>45)</sup>

## 4.2 법률전문성

수사절차에서 통역은 단순한 일상생활의 정도를 초월하는 전문성이 요청된다. 통역인이 수사과정에서 법률 용어나 형사절차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통역을 생략하거나 오역하면 피의자의 방어권이 행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해당 언어 구사뿐만 아니라 형사절차와 법률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해당 국가의 언어로 정확히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2008년 대검찰청에서 수행된 설문 연구에 따르면 설문 응답한 통번역인 가운데 73.9%가 법과 관련한 정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답변 반면, 대학 학부 때 전공 혹은 부전공으로 배운 사람은 4.4%, 교양과목으로 배운 사람은 8.7%에 불과하였다.<sup>46)</sup> 대검찰청 예규 ‘통역인 운영규정’이나 통역인을 모집공고에서도 통역 경력을 지원서에 포함할 것을 요청하는 반면 법률 전문성을 요청하지는 않는다.<sup>47)</sup> 반면 대법원의 ‘통역·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 제7조에서는 통역인 후보자를 정할 때 외국어 능력뿐만 아니라 법률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적절한 방법으로

43) 일본도 2019년부터 의무적 영상녹화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 내용으로는 배상균, “일본의 피의자신문 영상녹화제도”, 법학논고 제74집,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21 참조.

44) 현행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제3항은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도록 한다.

45) 이를 위하여 외국인 피고인 사건의 심리 과정 중 통역이 이루어지는 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녹음케 하고 해당 심급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보관한다(동예규 제13조).

46) 김한식/주진국/정정림, 앞의 보고서, 36쪽.

47) 예컨대 2021년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통역위원 모집 공고 참조. 검찰, “2021년도 통역위원 모집 공고”, <<https://www.spo.go.kr/site/spo/ex/board/View.do?cbldx=1402&bcldx=1015251>>, 검색일: 2023. 7. 30.

조사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수사단계 통역에서 법률지식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통역인 운영 규정에 이를 반영한 개정이 요청되는 바이다.

## V. 마치며

우리 헌법의 해석과 UN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외국인 피의자도 방어권을 보장받을 주체로 인정된다. 외국인 피의자에게도 형사사건의 일반적 인 적법절차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로 인정된다. 그러나 절차적 권리와 인권보호가 강조되는 형사절차에서 외국인 피의자의 권리는 언어의 장벽, 법문화적 차이 등 여러 환경적 요인으로 사실상의 보장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간과되기 쉽다. 외국인 피의자 스스로가 자신의 권리를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 또한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적 보완을 통하여 외국인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가 적절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본 문헌에서는 형사절차 및 권리에 관한 고지의무에 있어서 번역문 및 통역 어플리케이션의 활용을 주장하며 활용시의 유의점을 살펴보았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하여는 외국인 피의자가 겪는 변호인 선임의 어려움을 형사공공변호인제도를 통하여 보완하는 방안과 접견교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통역인 명단 제공, 스마트 접견의 완화적 허용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통역을 받을 권리에 관하여는 통역을 제공받을 기회의 판단 기준의 마련과 통역 기회의 확대, 그리고 통역의 질 향상을 위한 절차적 보완방안을 검토하였다.

이와 같은 절차적 보완은 실무상 외국인 피의자가 겪는 어려움을 바탕으로 여러 개선 방안을 검토한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외에도 다양한 문제사항이 발생하고 있으며, 더 많은 개선과 보완의 지점이 상존하므로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 노력이 요청된다. 외국인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정책적 배려는 보편적 인권에 기반을 둔 보호라 할 수 있다. 자국을 벗어나면 누구나 외국인이 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심리적 위축과 두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러한 상호적 관점을 기반으로 수사 과정에서 외국인 피의자가 내국인과 달리 차별적 처우를 받지 않도록 적정한 절차를 마련하고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참고문헌

### 1. 단행본

한수웅, 헌법학입문 제5판, 법문사, 2021.

### 2. 학술지

김대근, “형사공공변호인제도의 쟁점과 전망”, 치안정책리뷰 제72호, 치안정책연구소, 2021, 1-4쪽.

김운곤, “외국인범죄에 대한 형사사법적 대응”, 법학논집 제6호,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소, 2000, 285-328쪽.

김한균, “형사절차상 인공지능기반 통·번역 애플리케이션 활용과 적법절차”,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제13권 제3호, 한국형사소송법학회, 2021, 147-174쪽.

박혜림,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의 보장과 그 한계에 대한 고찰”, 중앙법학 제21집 제2호, 중앙법학회, 2019, 231-256쪽.

배상균, “일본의 피의자신문 영상녹화제도”, 법학논고 제74집,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21, 365-387쪽.

송승현, “변호인 접견교통권과 인권 보장 간의 괴리”, 법학논문집 제43집 제3호,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19, 115-151쪽.

송시섭, “사법통역인 법조윤리의 법제화 -통역의 ‘정확성’이 형사재판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홍익법학 제23권 제1호,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33-65쪽.

이우영, “피의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헌법적보장 관점에서의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도입입법안 분석 및 개선방안”, 입법학연구 제19집 제1호, 한국입법학회, 2022, 5-52쪽.

이지은/장원경, “사법통역제도 개선에 관한 소고”, 법학논집 제20권 제3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251-280쪽.

이형석, “유럽인권협약상 권리보장을 위한 체약국의 의무 -유럽인권재판소 결정례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47집,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37-64쪽.

임창호, “외국인 범죄수사의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17권 제4호, 한국공안행정학회, 2008, 282-332쪽.

주호노, “변호인선임권과 접견교통권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국제인권법의 관점에서-”,

경희법학 제49권 제4호,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255-284쪽.

홍서연, “국내 사법통역 교육의 현황 및 제언”, 통번역학연구 제22권 제2호,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연구소, 2018, 207-231쪽.

### 3. 신문기사

뉴시스, “미약 투약 외국인 “통역인 없어 위법 증거”...법원 “통역기 활용, 적법””, 2022. 10. 7,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21007\\_0002041136#\\_enliple](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21007_0002041136#_enliple)>, 검색일: 2023. 7. 30.

\_\_\_\_\_, “경찰 ‘통역 서비스’ 제자리 걸음...언어장벽에 범죄신고·수사 ‘막막’”, 2022. 12. 10,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21209\\_0002117312](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21209_0002117312)>, 검색일: 2023. 7. 30.

법률방송, ““피의자 인권보호” vs “세금으로 흉악범 보호 안 돼”...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도입 공청회”, 2019. 5. 21, <<http://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23159>>, 검색일: 2023. 7. 30.

법률신문, “늘어가는 외국인범죄...전문 통·번역인은 크게 부족”, 2016. 9. 19,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3090>>, 검색일: 2023. 7. 30.

서울경제, “통역 인력 없이 진행했다가 무효되는 외국인 재판”, 2019. 4. 12, <<https://www.sedaily.com/NewsView/1VHU60USXA>>, 검색일: 2023. 7. 30.

서울신문, “무고한 외국인 성폭행범 만들 뻔한 ‘경찰 통역’”, 2015. 2. 17,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0217010010>>, 검색일: 2023. 7. 30.

연합뉴스, “검찰, 피의자 영상녹화제도 유명무실...올해 실시율 12.2%”, 2019. 10. 1, <<https://www.yna.co.kr/view/AKR20191001044400004>>, 검색일: 2023. 7. 30.

\_\_\_\_\_, “외국인 수사에 필수인 민간 통역인...푸대접에 이탈 현상”, 2022. 6. 20, <<https://www.yna.co.kr/view/AKR20220619034200004>>, 검색일: 2023. 7. 30.

이데일리, “법원행정처, ‘항소법원’ 설치 추진한다...인적구성 등 검토”, 2022. 9. 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800726632458152>>, 검색일: 2023. 7. 30.

중앙일보, “230만 국내 체류 외국인, 검찰 체포 때 통역인 조력 받는다”, 2019. 8. 7,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546274#home>>, 검색일: 2023. 7. 30.

한겨레, “외교부 영어 ‘성폭력 예방교육 자료’ 오역·오타 315곳”, 2022. 10. 19,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063400.html>>, 검색일: 2023. 7. 30.

#### 4. 웹자료

국가통계포털, “경찰청범죄통계”, <[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parentId=C.1&vwcd=MT\\_ZTITLE&menuId=M\\_01\\_01](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parentId=C.1&vwcd=MT_ZTITLE&menuId=M_01_01)>, 검색일: 2023. 7. 30.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2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https://www.immigration.go.kr/immigration/1570/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aW1taWdyYXRpb24IMkYyMjglMkY1NzI1MDclMkZhcjRjbFZpZXcuZG8lM0ZwYXNzd29yZCUzRCUyNnJnc0JnbmRIU3RyJTNEJTl2YmJzQ2xTZXEIM0QlMjZyZ3NFbmRkZVN0ciUzRCUyNmlzVmllld01pbmUIM0RmYWxzZSUyNnBhZ2UIM0QxJTl2YmJzT3BlbldyZFNlcSUzRCUyNnNyY2hDb2x1bW4lM0QlMjZzcmNoV3JkJTNEJTl2>>, 검색일: 2023. 7. 30.

#### 5. 보고서

김한식/주진국/정정림, 외국인을 위한 수사·공판서류 번역 및 통역 실태 조사 연구, 대검찰청 공판송무과, 2008.

신의기/강은영, 범죄수사 절차상 피의자의 인권침해 현황 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03.

안성훈/이지은, 형사사법절차상 사법통역의 개선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

이재상/박미숙, 수사절차상 피의자의 변호권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 6. 판례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9327 판결.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도17103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0. 11. 5. 선고 2020노336판결.

헌법재판소 2004. 9. 23. 선고 2000헌마128 결정.

국가인권위원회 20진정0256500.

## [ Abstract ]

## Procedural Improvement to Ensure the Defense Rights of Foreign Suspects in Investigative Procedures

Kweon, Jihye\*

The number of foreigners staying in Korea has steadily increased, with 2.2 million people staying as of 2022, which is about 25 or 1 in our society. As the number of foreigners increases, crimes committed by foreigners are inevitably increasing. Foreigners are recognized as subjects guaranteed the right to defense in accordance with the interpretation of the Korean Constitution and the UN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However, due to language and legal and cultural differences, it is inevitable to be in a virtually vulnerable state in the investigation process. Therefore, procedural protection should be made so that foreign suspects do not receive discriminatory treatment in the investigation process.

In this article, the laws related to the right to defense of foreign suspects in investigation procedures are reviewed, focusing on the duty to notify criminal procedures and rights, the right to counsel, and the right to interpret. In addition, practical problems arising from exercising the right to defense were identified, and procedural supplementation and improvement measures were sought. First of all, the management of translations and the use of interpretation applications were reviewed in cases where interpreters were not accompanied when notifying criminal procedures and rights.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prepare standards and procedures related to usage standards in the reality that the use of interpretation applications increases on the front line with the development of AI technology. Regarding the right to counsel, the difficulty of appointing lawyers for foreign suspects shall be supplemented by applying the public defender system, and a list of private interpreters shall be provided and smart access shall be eased. Finally, regarding the right to receive interpretation, this article sought ways to ensure the quality of interpretation, to expand interpretation opportunities

---

\* Assistant Professor, The University of Suwon

for the reality of lack of interpreters, and to ensure the quality of interpretation and that the object and judgment of interpretation should be made through objective procedures rather than arbitrary judgment by investigative agencies.

**[Key Words]** Foreign Suspects, Defense Rights, Right to Counsel, Right to Interview and Communication, Right to Interpret